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

■ 천하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50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천하람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7. 18.
3. 회 부 일 : 2025. 7. 21.

II. 제안이유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될 경우 경제학자 조지프 슈페터(Joseph A. Schumpeter)가 명명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확산되어 국민 경제의 역동성이 강화되고, 국부의 창출과 축적이 가능해지는 바, 벤처 기업활동에 대한 장려와 촉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그러나 2025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벤처투자 규모는 총 11.9조원, 펀드결성 규모는 10.6조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나, 이는 투자와 펀드결성이 활발했던 2021년의 투자액 15.9조원과 결성액 17.8조원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

또한,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로 이전한 국내 스타트업의 수가 2018년 101개에서 2024년 186개로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내 벤처 생태계가 위축을 넘어 고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음.

한편, 2024년 기준으로 벤처 펀드결성에 있어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의 구성비가 23대77로 나타나 민간의 역할이 종전에 비해 축소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민간 자금의 새로운 유입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벤처 시장으로 새로운 민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상장형 공모펀드로서 일반 투자자들이 비상장 벤처기업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에 도입해 벤처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의 도입(안 제9조, 제12조 및 제229조)

1) 현행법상 자산운용사 등도 충분히 상장형 벤처 전용 펀드를 결성할 수 있으나, 동일기업의 지분 취득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상 규제가 전략적 투자를 선호하는 벤처투자에 적합하지 않고, 기존 펀드 운용사 역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상장형 벤처 펀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2) 이에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을 도입해 완화된 인가 요건 및 펀드 결성 요건을 적용하고, 벤처투자회사 등도 상장형 공모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개선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관련 자산운용 규제 조정(안 제81조 및 제2

29조)

-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상장형 공모 펀드이기에 일반 공모 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바, 자산운용 규제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취지와 성격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미국의 사업개발회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BDC)와 영국의 벤처캐피털신탁(Venture Capital Trust, VCT)을 참고하여 주투자대상기업인 벤처기업에 대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70%를 초과하여 투자하도록 의무화하며, 동일 벤처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 대여 허용(안 제83조)

- 1) 국내 일반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에 대한 금전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미국 사업개발회사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제를 두지 않아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채권형 BDC와 지분형 BDC를 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 벤처 기업가의 경우 지분 희석을 우려해 외부의 지분투자보다 금전 대여를 선호하는 경우도 많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금전 대여 허용이 필요한 상황임.
- 2) 이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전 대여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보장하려는 것임.

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의무화(안 제29조의2)

- 1) 환매 불가 상장형 공모펀드의 경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집합투자업자의 방만한 펀드 운용 등 도덕적 해이를 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결성 시 집합투자업자의 출자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자기가 설정·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 이상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함.

마. 기타 고려 사항

-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체가 고위험 상품인 점, 일반 투자자가 펀드 운용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은 허용하지 않음.
- 2) 주투자대상기업의 정의와 관련해 성장가능성 등 모호한 표현의 사용을 자제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함.

IV. 검토의견

- 개정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70% 이상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려는 내용임(안 제229조의2 신설, 제230조제3항).

법률 제21061호(2025. 9. 16,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개 정 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㉔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① ~ ㉔ (현행과 같음) <u>㉔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u> <u>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u> <u>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u> <u>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u> <u>한다.</u> <u>㉕ 이 법에서 “기업성장집합투자업</u> <u>자”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u> <u>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u>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5. (생 략) 6.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u>요건</u> 을 갖 출 것 가.·나. (생 략)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현행 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 ----- <u>요건(기업</u> <u>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u> <u>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으로 한</u> <u>다)</u> ----- 가.·나.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61호(2025. 9. 16,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개 정 안
	1.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 기업(이하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주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금액 이하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2.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동일한 주투자대상 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방식과 그 외의 투자방식은 각각 동일방식으로 본다. 3.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지분증권 수(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말한다) 이상으로 투자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자산에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는 행위

법률 제21061호(2025. 9. 16,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개 정 안
<신 설>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 ③ (생 략) ④ <u>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u>	<u>가. 국채증권</u> <u>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u> <u>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 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u> <u>라.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 자성이 낮거나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u> 5. <u>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 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u> 6. <u>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 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위</u> ⑥ <u>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집 합투자업자가 가격 변동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 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u>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운용할 때----- 대여하여서는-----. 다만, 다음

법률 제21061호(2025. 9. 16,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개 정 안
<u>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 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u> <u><단서 신설></u> <u><신 설></u> <u><신 설></u> ⑤ (생 략) 제87조(의결권 등) ① ~ ③ (생 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u>제81조제1항</u>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 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 ⑨ (생 략)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집합 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 류를 표시하는 문자(증권·부동산· 특별자산·<u>혼합자산</u> 및 <u>단기금융</u>을 말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 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	<u>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u>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u>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 합투자기구가 같은 호에 따른 주투 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 우 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의결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제81조제1항, 같 은 조 제5항제2호·제3호</u>----- ----- ----- -----.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① ---- ----- ----- ----- -----<u>혼합자산·단기금융 및 기 업성장</u>----- ----- -----. ② (현행과 같음)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 -----.

법률 제21061호(2025. 9. 16,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개 정 안
다. 1. 증권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증 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 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서 <u>제2호 및 제3호</u>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집합투자기구 2. 3. (생 략) 4.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재산을 <u>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u> 5. (생 략) <u><신 설></u> <u><신 설></u>	1. ----- ----- ----- ----- ----- ----- ----- ----- <u>--제2호·제3호 및 제6호--</u> ----- 2. 3. (현행과 같음) 4. ----- -----<u>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6호</u>----- ----- 5. (현행과 같음)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 <u>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70 이 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 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육성에 관 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이하 “주투자대상기업”이 라 한다)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 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 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u> <u>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①</u>

법률 제21061호(2025. 9. 16,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개 정 안
	<u>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u> <u>1.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설립할 것</u> <u>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할 것</u> <u>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u> <u>4. 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u> <u>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 수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u>

법률 제21061호(2025. 9. 16, 일부개정)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개 정 안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 ② (생략)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신설> 10. ~ 29. (생략)	· <u>설립·운용·공시·해지·해산, 주</u> <u>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u> <u>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상장 등에</u> <u>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90일(전문투 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 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에 는 3년)-----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u>제81조제5항(제6호를 제외한</u> <u>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u> <u>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u> <u>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u> 10. ~ 29. (현행과 같음)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펀드로서, 공모펀드의 특징인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도 사모펀드와 같이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설정·운용 및 회수 등의 각 단계에서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된 펀드를 의미함.

□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80년에 기존 투자회사법상의 규제를 완화한 소기업투자촉진법(Small Business Investment Incentive Act) 제정을 통하여 중소·성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폐쇄형 투자회사인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하였고, 영국 또한 1995년에 재정법(Finance Act)을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공모·폐쇄형 투자회사인 VCT(Venture Capital Trust)를 도입하는 등 모험자본의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미국의 BDC는 벤처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지원 및 전문경영능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로, 공모 및 거래소 상장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비상장기업 등에 자금공급 및 경영지원을 한 후 해당 기업의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투자수익으로 향유함.¹⁾

○ 영국의 VCT는 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의 일종으로, 개인투자

1) 금융위원회,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 도입방안」, 2019.10.

자의 투자를 받아 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며 적격 투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자금공급 및 경영지원을 제공함.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모험자본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구체적으로,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펀드의 자산총액 중 50% 이상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정의하고, ② 진입규제의 경우 기존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도록 하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변경인가 시 적용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며, ③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의 최소모집가액, 5년 이상 존속기간, 중도환매가 제한되는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였으며, ④ 투자자 보호장치로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분기별 공정가액을 의무화하였음.

□ 한편, 동 개정안 역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개정 전에 발의 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되지 못하였음.²⁾

2) 동 개정안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제42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의 심사가 있었던 2025년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근거규정과 유사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① 주투자대상기업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은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으로 넓은 반면 개정안은 벤처기업에만 한정하고 있는 점(제229조),

②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이 「자본시장법」에는 50%³⁾로 규정된 반면 개정안에는 70%로 규정된 점(제229조),

③ 금전 대여의 상한이 「자본시장법」에는 주투자대상에 대한 투자금액의 50%⁴⁾인 반면 개정안은 별도 상한이 없다는 점(제83조),

④ 개정안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제81조⁵⁾) 및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 의무(제229조의 2⁶⁾)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의 대여,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

2.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전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전 대여의 절차·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6. 성장가능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③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분

□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주투자대상기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대한 최소투자비율을 개정안과 같이 상향하게 될 경우 벤처기업에 한정해 집중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측면은 있으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오히려 자금공급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벤처기업이 중견기업, 코스닥상장기업 등으로 성장(Scale-up)할 수 있는 자생적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금전 대여의 상한 설정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방식이 벤처대출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대출한도를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및 분기별 공정가액 평가 의무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인 비상장기업의 경우 기업가치의 평가가 쉽지 않아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증권시장에 상장될 경우 일반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우려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로서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9월에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2026년 3월에 시행될

기별로 1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예정이므로, 개정안의 논의 여부는 제도의 시행 후 그 효과와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11